[별표 1] 예산 과소편성 시정요구 사항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20 | 15 | 2016 | 2017 |
|------------------------------|------------------------------|--|---------|---------|---------|---------|
| | 7188 | \\\\\\\\\\\\\\\\\\\\\\\\\\\\\\\\\\\\\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 안보실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연금지급금) | 비정규직의 법정부담금이 부족하여 연례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것 | 260 | 312 | 315 | 502 |
| 국회 입법 조사처 | 인건비 | 연구관 및 임기제 인력 비율이 높 은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를 계상할 것 | 8,778 | 8,864 | 9,512 | 9,868 |
| 국회 예산 정책처 |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등 | 정책연구비 등 사업수행 관련 예산 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 734 | 695 | 466 | 466 |
| 대법원 | 기관운영 기본 경비 | 직책수행경비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불필요한 전용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할 것 | 63,439 | 64,987 | 66,121 | 69,672 |
| | 국선변호료 지원 |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선변호료 지연지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 록 주의할 것 | 28,500 | 32,707 | 55,143 | 56,821 |
| 헌법 개판소 | 국선대리인보수등 | 헌법재판에서 구두변론과 참고인 진술제도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 으로 예측하여 관련 예산이 적정 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 136 | 136 | 118 | 130 |
| | 교정기관 공공 요금 및 수용 관리 | 교정기관 공공요금 및 구료비 예 산 편성기준을 수용정원이 아니 | 160,747 | 185,934 | 169,229 | 179,320 |
| 법무부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 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치료감 호소의 노후시설 보수와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에 적 극적으로 노력할 것 | 6,095 | 6,078 | 6,964 | 7,552 |

| 부처 | ТЮЩ | 시정요구 | 20 | 15 | 2016 | 2017 |
|-----------------|------------------------------|---|---------|---------|---------|---------|
| ナベ | 사업명 | 시영화구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법제처 |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규 연구원 충원 예산을 확 보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251 | 244 | 365 | 422 |
| 공정 거래 위원회 | 독과점시장 감 시체계 운영 | 신고포상금 지급원칙을 명확히 수 립하고, 신고포상금 예산을 적정 수 준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 729 | 851 | 835 | 835 |
| | 국내여비 지출 관련 | 국내업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과도한 예산전용으로 다른 사업 집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장여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 | 280 | 425 | 301 | 416 |
| 국민 권익 위원회 | 부패신고자보호 보상 |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및 인력확보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1,360 | 1,427 | 2,247 | 2,021 |
| | 공익신고제도운영 |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및 인력확보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380 | 380 | 1,020 | 1,745 |
| 국가 보훈처 | 보훈병원 진료 | 보훈병원 진료비 등의 정확한 추계 를 통한 예산 편성으로 과도한 이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316,477 | 328,777 | 336,299 | 344,553 |
| 기획 재정부 | 복권기금-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 기획재정부는 학대피해아동센터 가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복 권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 | 5,705 | 4,807 | 2,934 | 4,168 |
| 국세청 | 압류재산공매 | 압류재산공매 사업의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을 통하 여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4,576 | 4,893 | 4,576 | 5,000 |
| | 조사반활동비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지급액 인상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259 | 695 | 600 | 1,221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 15 | 2016 | 2017 |
|--------------------|--------------------------------------|---|---------|---------|---------|---------|
| 1 - 1 | 180 |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 향후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예산 편성 시 과거의 신고포상금 지급 추이 및 제도의 변경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전에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부족에 따른 이·전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1,192 | 2,088 | 1,293 | 1,793 |
| 관세청 | 관세행정관리 | 관세소송비용의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 50 | 644 | 50 | 50 |
| 미래 창조 과학부 | 기초과학연구 원 연구운영비 지원 | 기초과학연구원 및 국제과학비즈 니스벨트 사업의 성공적 육성·개 발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의 신 규 연구단 예산을 적극 반영할 것 | 223,549 | 221,957 | 235,706 | 239,522 |
| 방송 통신 위원회 | 지역·중소방송 콘 텐츠 경쟁력 강화 | 지역방송 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 할 것 | 2,300 | 2,300 | 4,000 | 3,460 |
| | 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 조사 | 폐사지 보존에 대한 예산 확보와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1,890 | 1,886 | 1,796 | 1,440 |
| 문화 재청 |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 문화재의 해외반출방지 및 국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조직과 예산 을 늘리고, 반출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 5,893 | 5,867 | 7,872 | 5,328 |
| 외교부 |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 JPO 선발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 완하도록 하고, JPO의 정규직 진 출률 제고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3,696 | 4,067 | 3,266 | 3,145 |
| 민주평화 통일 자문화의 | 인건비 |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 수준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사업비에서 인건비로의 전용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할 것 | 4,712 | 4,816 | 5,076 | 5,198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20 | 15 | 2016 | 2017 |
|-----------------------|--------------------------|---|-----------|-----------|-----------|-----------|
| ナヘ | 71 H B | 시경프무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 시설유지운영 (단위사업) |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것 | 345,686 | 422,931 | 354,363 | 368,362 |
| 국방부 | 기본급식 | 2017년도 병 기본급식비 예산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 도록 할 것 | 1,395,568 | 1,401,612 | 1,451,880 | 1,467,570 |
| 병무청 | 징병검사 | 향후 예산이 부족편성 되지 않도 록 소요 반영을 정확히 할 것 | 8,775 | 8,745 | 8,923 | 24,113 |
| 중앙선 거 관리 위원회 | 국회의원선거 관리 | 선거관리 준비경비 예산이 적정 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1,045 | 1,541 | 192,118 | - |
| 국민 안전처 | 지방관서기본경비 | 국민안전처는 지방관서 기본경비의 공공요금의 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 3,060 | 8,005 | 3,715 | 4,336 |
| | 재해복구 지원 |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재해복구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 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및 연구·검토할 것 | - | 3,192 | - | - |
| 행정 가치부 | 지자체 여성등 균형인사 정책 지원 | '지자체 여성 등 균형인사 정책 지원사업'을 독자적인 세부사업 으로 편성하고, 균형인사 정책 추 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 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34 | 34 | 40 | 40 |
| | 정부통합전산 센터 운영 |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과정에서 연례적인 공공요금 예산의 부족 에 따른 조정 반복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공공요금 관 련 예산을 확보할 것 | 195,998 | 187,390 | 198,432 | 202,372 |

| Hal | ПОЩ | 11207 | 20 | 15 | 2016 | 2017 |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경찰청 | 경찰복지증진 |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처(해 경 및 소방)와 협의하여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통합 운영할 것 | 1,074 | 1,074 | 1,074 | 1,386 |
| | 범죄피해자보 호기금 (경찰청) | 법무부와 협의하여 범죄피해자보 호기금 내에 경찰청에 대한 사업 예산 비중을 상향 조정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 | 240 | 343 | 1,071 | 1,071 |
| 농림 | 농기계임대 (밭농업기계화 관련사업) | 발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발 농업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 책을 마련하고 투자를 확대할 것 | 220 | 220 | 264 | 285 |
| 수산 식품부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실적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예산 지원 을 확대할 것 | 690 | 690 | 690 | 1,614 |
| 해양 수산부 | 피해보전직불금 |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계획액을 증액할 것 | 3,000 | 180 | 3,000 | 3,000 |
| 농촌 진흥청 |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의 손 실보상금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7,040 | 14,528 | 11,386 | 10,873 |
| 산림청 | 임도시설 | 임도시설 확대는 물론 임도시설 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할 것 | 148,664 | 148,241 | 141,895 | 150,332 |
| 산업 통상 자원부 | 전력산업기반 기금 기타지원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민간환경 감시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을 증액할 것 | 2,911 | 2,911 | 3,127 | 3,271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 15 | 2016 | 2017 |
|-----------|--|---|-----------|--------------------|-------------|---------------------|
| 중소 기업청 | 중소기업정보 화 기반구축 (기술보호지원 -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예 산확보와 인지도를 제고할 것 | 1,490 | <u>결산</u> 1,490 | 예산 1,440 | <u>예산안</u> 1,300 |
| |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 록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288,986 | 288,986 | 259,330 | 268,357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등 의무지출사업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해당 예산이 재량지출사업으로 용도변 경되지 않도록 할 것 | 2,700,626 | 2,765,666 | 3,389,311 | 3,619,132 |
| 보건 | 의료급여 경상 보조 |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연례 적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할 것 | 4,587,605 | 4,587,111 | 4,819,221 | 4,746,764 |
| 복지부 | 아동발달지원 계좌 |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매칭 금액이 발 생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 하도록 할 것 | 10,447 | 10,232 | 10,917 | 12,804 |
|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인상, 자폐 | 467,892 | 459,247 | 522,070 | 516,486 |
| |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 성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확충 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 3,999 | 3,910 | 9,446 | 8,567 |
|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 할 것 | 39,333 | 39,327 | 34,479 | 29,367 |
| 기상청 |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 조속한 지진 관측망 확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9,054 | 9,526 | 8,108 | 9,418 |
| 국토 교통부 | pso보상 | 공기업의 공익적 책무 및 재무여 건, 정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전이 이 루어지도록 검토할 것 | 350,863 | 350,863 | 350,863 | 296,222 |

| Hal | UMH | 11210 7 | 20 | 15 | 2016 | 2017 |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 과적단속운영 사업 | 과적단속운영사업의 적정 공공요 금예산 확보대책을 마런하고, 상 습체납자의 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과태료 징수 실적을 제 고할 것 | 34,397 | 35,625 | 31,225 | 28,260 |
| | 여성정책전략 기반 구축 | 여성친화도시 제도의 컨설팅 예산확보, 적절한 교육 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사업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 | 99 | 95 | 35 | 35 |
| 여성 가족부 | 아이돌봄지원 사업 | 교통비 지급이 아이돌보미 처우 와 직결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수 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예산 을 확보할 것 | 78,716 | 76,544 | 82,816 | 86,768 |
| |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 지원 |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은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 니터링 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수 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모니터링 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할 것 | 36 | 36 | 36 | 36 |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별표 2] 예산 과다편성 또는 집행부진 시정요구 사항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20 | 15 | 2016 | 2017 |
|-----------------|----------------------------------|---|-----------|---------|---------|---------|
| | | 시성프로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운영위원 | [호]] | | | | | 1 |
| | 행정효율성 증 진 및 능력개 발 (강사료) |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부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강사료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20 | 6 | 20 | 15 |
| 대통령 비서실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외업무여비) | 국외업무여비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수요를 검토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할 것 | 354 | 99 | 324 | 200 |
| | | 향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 세 비목의 적정 집행규모를 예측 | 1,221 736 | 736 | 947 | 916 |
| | 공요금 및 제세) | 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것 | 44 | 14 | 39 | 28 |
| 대통령 경호실 | 총액인건비 대 상 기본경비(특 근매식비) | 대통령경호실은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의 특근매식비를 과거 집행률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을 편성할 것 | 2,618 | 2,329 | 2,880 | 2,722 |
| 국회 입법 조사처 | 입법서비스지 원활동 | 업무중복 등의 문제로 불용액이 발 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 | 1,018 | 948 | 914 | 959 |
| [법제사법 | [위원회] | | | | | |
| | 일반인건비 | 일반인건비에서 과도한 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보다 면밀히 편성하고, 법관 결원 을 적극적으로 보충할 것 | 876,365 | 874,867 | 941,522 | 995,373 |
| 대법원 | 연수원 인건비 | 사법시험 합격자 및 연수생 수의 감소 추세에 따라 실제 수요에 맞 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 | 26,116 | 21,869 | 19,950 | 17,383 |
| | 연수원 기본경비 | 연수원 기본경비 예산을 감액 편 성하여 전용 또는 불용이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할 것 | 3,638 | 3,104 | 3,308 | 2,794 |

| 부처 | 사업명 | 니거ㅇㄱ | 20 | 15 | 2016 | 2017 |
|-----------|---------------------|--|---------|--------|--------|--------|
| 十个 | 시합당 | 시정요구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 양형제도개선 지원 | 양형위원회 회의 관련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추어 감액 편성하고 회의를 활성화하여 내실 있게 집행할 것 | 2,200 | 2,135 | 2,050 | 1,428 |
|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 사업비의 조정 및 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소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편성할 것 | 8,276 | 7,789 | 8,326 | 9,236 |
| | 등기소신증축 | 사전준비 및 계획을 철저히 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 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전용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 24,280 | 28,716 | 18,010 | 25,449 |
| 감사원 | 감사활동경비 |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 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타 비목으로의 전용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2,800 | 2,091 | 2,500 | 2,200 |
| -1H | 재판자료확충 (판례집 발간) | 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 사업의 성 과분석과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 여 탄력적으로 수요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79 | 52 | 79 | 71 |
| 헌법 재판소 | 재판자료확충 (헌법논총) | 헌법재판소는 헌법논총 발간 사 업에서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분석 결과와 사업계 획을 토대로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43 | 26 | 43 | 39 |
| 법제처 | 법제정비 | 사전입법지원 자문료 예산 소요 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 1,202 | 1,003 | 1,534 | 1,247 |
| [정무위원 | <u>[호</u>] | | | | | |
| 금융 | 신용보증기금 구상권 관리 | 구상권관리 사업에서 실제 소요 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 107,810 | 75,014 | 95,618 | 92,311 |
| 위원회 | 기술신용보증기 금 구상권 관리 | 로 예산을 계상할 것 | 33,140 | 25,895 | 29,200 | 28,588 |

| | | U210 7 | 20 | 15 | 2016 | 2017 |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국가 보훈처 |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제대군인수업료 보조대상자가 계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대군인 수업료보조사업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추계의정확성을 제고할 것 | 1,001 | 617 | 800 | 460 |
| [기획재정 | 성위원회] | | | | | |
| | 국민경제자문 회의 지원단 운영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 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 2,191 | 1,581 | 2,059 | 1,953 |
| | 국가재정운용 계힉 수립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 국 외여비 예산의 필요성 및 집행가 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 | 969 | 809 | 921 | 871 |
| | IDB 연차총회 개최 | 필요한 행사비용을 가능한 정확 하게 산정하여 예산의 과다편성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7,800 | 6,149 | - | - |
| 기획 재정부 | 국제금융기구 출연 |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 불필요한 예산 불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 | 107,482 | 97,438 | 103,662 | 114,218 |
| | 공공자금관리 기금-국채이자 상환 | 기준금리 과다산정으로 인한 이 자지출 불용액 규모가 최소화되 도록, 예산편성 시 한국은행, 국 회예산정책처 등 국가기관의 예 측치와 조달금리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기준 금리를 추계할 것 | 18,952,850 | 18,255,731 | 18,832,653 | 18,832,819 |
| | 외국환평형기금- 국공채이자상환 | 국공채 이자상환 계획액 편성 시 실제 발행금리를 적용하여, 국공 채 이자상환 계획액을 과다 편성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444,289 | 329,997 | 334,235 | 357,000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 15 | 2016 | 2017 |
|-----------------|-------------------------------|--|-----------|-----------|-----------|-----------|
| 1 //1 | /I E O |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국세청 | 국세행정정보화 |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시스템 사업의 세부내용 및 추진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실제소요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할 것 | 400 | 254 | 400 | 350 |
| | 인건비 | 인건비 불용액이 대규모로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1,065,671 | 1,021,315 | 1,078,912 | 1,131,858 |
| 조달청 |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관련 검토 수당 등을 편성함에 있어 적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 성되지 않도록 할 것 | 2,625 | 2,242 | 2,553 | 2,962 |
| 통계청 | 인구주택 총조사 | 통계청은 총조사 예산의 불용률 감소를 위해 인터넷 조사율 목표 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산정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것 | 106,124 | 97,246 | 10,236 | 7,277 |
| [미래창조 | · ·과학방 송통 신위원회] | | • | | | |
| |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 사업추진상의 기술적·관리적 애로사항은 없는지, 사업목표와 추진일정 및 적정소요 예산이 투입되고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철저한 집행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관리가 되도록 주의할 것 | 255,500 | 255,500 | 269,995 | 270,000 |
| 미래 창조 과학부 |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에서 연구로 건설허가가 사 업의 전제조건임을 고려하여 예 산 편성 및 집행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것 | 54,670 | 54,670 | 22,231 | 3,880 |
| |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연구 운영비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수리과학 연구소에 지원하는 출연금의 연 내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집행관리를 철 저히 할 것 | 10,040 | 10,040 | 9,774 | 9,905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20 | 15 | 2016 | 2017 |
|-------|---------------------------------------|---|---------|---------|---------|---------|
| 十个 | 시 티 경 | VIOTT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교육문호 | 체육관광위원회] | | | | | |
| | 특수목적대학 실습 지원 | 특수목적대학 실습 지원 예산의 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 지 않도록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 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9,743 | 8,919 | 4,087 | 8,888 |
| | 국립대학 국유 재산 활용 활성화 | 국립대학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예산의 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을 정 확히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17,459 | 16,875 | - | - |
| |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 심사 |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예산 의 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하지 않도록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18,682 | 17,810 | - | - |
| 704 | 국제교육교류 협력활성화 |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 예산의 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 지 않도록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 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57,984 | 55,792 | 66,738 | 71,300 |
| 교육부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인원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 행할 것 | 150,268 | 149,744 | 145,073 | 128,216 |
| | 한국장학재단 출연 | 한국장학재단 출연 예산의 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 도록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불 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335,326 | 274,899 | 204,359 | 251,580 |
| | 국립대학 시설 확충 |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의 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 도록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사 업계획을 수립할 것 | 365,130 | 349,032 | 412,207 | 384,172 |
|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 도록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국 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가능성을 면 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 36,947 | 37,533 | 36,809 | 23,881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 15 | 2016 | 2017 |
|-----------------|---------------------------------------|--|--------|--------|--------|--------|
| | | 10221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 지역콘텐츠 산업 균형발전 지원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콘텐 츠누림터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 토 할 것 | 4,000 | - | - | - |
| 문화 체육 관광부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 화하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 14,535 | 14,535 | 14,736 | 13,262 |
| |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 여행 | 지방문화회관의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등 사전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5,700 | 2,347 | - | - |
| 문화 재청 | 문화유산관광 자원개발 | 사업 실적 및 사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규모 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 관 리를 강화할 것 | 12,866 | 9,461 | 12,230 | 18,411 |
| [외교통일 | !위원회] | | | | | |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 단 출연 [인도네시아 (ODA)] | 한국국제협력단은 인도네시아 지원 사업에 있어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과다한 전용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주의할 것 | 13,847 | 8,798 | 10,987 | 4,624 |
| |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아프리카 지역 비중점국가 그룹) |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연례 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전략사업 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 록 할 것 | 25,000 | 11,369 | 22,000 | 20,000 |

| ㅂㅋ | 1 LOI DI | 니거ㅇㄱ | 20 | 15 | 2016 | 2017 |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추세를 면 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입국 예상 인원을 산출하는 등의 개선 노력 을 통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할 것 | 77,000 | 64,483 | 69,160 | 59,141 |
| 통일부 | DMZ세계평화 공원 조성 | 통일부는 사업 진전을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하거나 사업을 재검 토할 것 | 32,400 | 29,900 | 30,000 | 33,000 |
| | 전시납북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 | 진상규명위원회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항목의 편성을 지양하고 6.25 납북피해기념관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 | 5,583 | 4,127 | 11,350 | 9,589 |
| 민주평화 통일 자문화의 | 자문위원 역량 강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임차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효율 적으로 집행할 것 | 3,738 | 3,611 | 3,423 | 2,470 |
| [국방위원 | [호] | | • | | | |
| 국방부 | 동원훈련, 일반 훈련 | 예비군훈련 참가예상인원을 사전 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상금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42,857 | 41,131 | 44,237 | 43,087 |
| 1 1 3 − | 예비전력운영 지원 | 국방부는 예비역 간부 진급 관련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 의할 것 | 390 | 310 | 390 | 323 |
| 병무청 | 병역의무자 지원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측 가능한 사항의 반영 등 사업에 대한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확하게예산을 편성할 것 | 28,492 | 26,868 | 29,582 | 30,177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20 | 15 | 2016 | 2017 |
|-----------------------|------------------|---|---------|---------|---------|---------|
| 一一 | 시티징 |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 신규사업 | 방위사업청은 예산집행이 가능한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신 규사업을 편성 | 146,818 | 121,114 | 58,713 | 18,818 |
| 방위 사업청 | 대포병탐지 레이더 | 원제작사의 기술지원 의도를 명 확히 파악한 후 창정비요소개발 예산을 반영할 것 | 44,643 | 22,555 | 100 | - |
| | 차기상륙함 | 차기상륙함 예산 편성 시 관련 무기체계의 양산 일정을 신중히 고려할 것 | 187,558 | 183,511 | 224,976 | 162,216 |
| [안전행정 | [위원회] | | | | | |
| 중앙선 거 관리 위원회 | 위법행위예방 활동 | 우수 선거부정감시단 성과금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적정 한 예산을 편성할 것 | 10,926 | 10,616 | 10,603 | 9,715 |
| | 사유재산피해 복구비 지원 | 과학적 추계치에 근거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이 대규모 로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30,000 | 386 | 25,000 | 50,000 |
| 국민 안전처 | 연안구조장비 도입 | 사업수립 과정에서 구매할 장비의 수량과 단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 이월을 방지할 것 | 13,350 | 2,353 | 14,075 | 19,840 |
| | 국민대통합 위원회 운영 |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비효율적이 고 과다 책정된 예산 편성 구조 를 개선할 것 | 8,455 | 6,709 | 7,389 | 6,664 |
| 행정 가치부 |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산출 근거를 면밀하게 점검할 것 | 8,851 | 8,851 | 8,613 | 8,863 |
| | 자전거 인프라 구축 | 이미 건설된 자전거도로 전반에 대한 소관 부처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여 자전거도로의 관리상태 와 자전거도로간의 연결상태 등 을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 29,410 | 29,390 | 1,805 | 1,369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 15 | 2016 | 2017 |
|-----------------|---|---|---------|---------|---------|---------|
| 1 11 | N 8 0 |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 대일항쟁조사 지원위원회 운영 | 을 편성하도록 할 것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과 관련 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 록 예산 편성시 소요와 그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것 | 7,625 | 6,130 | 6,644 | 4,594 |
| |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지원 |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보상금예 산 편성 시 산출근거의 정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 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3,710 | 848 | 2,410 | 2,062 |
| 인사 혁신처 | 공무원교육훈련 | 향후 단기국외훈련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교육훈련계획 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해 단기국외훈련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 4,795 | 3,646 | 4,870 | 4,870 |
| | 인건비(수습행정 관등) 인건비(중공교) 인건비(소청심사) | 예산 편성 시 면밀한 분석과 검 토를 통해 향후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반복되 지 않도록 할 것 | 24,043 | 20,187 | 24,619 | 585 |
| [농림축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농귀촌활성 화지원 |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실집행실적 부진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할 것 | 20,900 | 20,900 | 16,500 | 14,600 |
| 농림 축산 식품부 | 일반농산어촌개발 | 농림축산식품부는 토목·건축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업보다 소규모 지역역량강화 예산 비중을 늘리는 등 연례적 집행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873,300 | 891,000 | 872,300 | 872,300 |
| | 재해대책비 | 농정예산이 실제규모에 비해 부풀 리게 보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 하여 재해대책비 예산을 축소 편 성하도록 할 것 | 109,200 | 9,800 | 108,500 | 127,500 |

| 부처 | 1101H | 시저ㅇㄱ | 20 | 15 | 2016 | 2017 |
|-----------|-----------------|--|---------|---------|-----------|---------|
| 一一个 | 사업명 | 시정요구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 정부양곡매입비 | 정부양곡매입비 예산 상 매입단 가를 가능한 정확하게 편성할 것 | 999,700 | 922,400 | 1,020,900 | 763,700 |
| | 국제기구분담금 | FAO연락협력사무소 설치 관련 진행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 산을 편성 할 것 | 890 | - | - | - |
| | 식품외식종합 자금 | 노후시설현대화 사업 등 내역사업 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 을 강구하고, 수요부족 및 과다 예산편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 하게 파악할 것 | 114,000 | 64,200 | 131,200 | 120,300 |
|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는 판매장개설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시킬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수요부족과 과다 예산편성 여부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여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을 감액편성하고 사업을 축소할 것 | 1,400 | - | 1,400 | 1,400 |
| | 밭농업직불제 | 발농업직불제 대상농지의 정확한 계측과 신청률의 세밀한 분석 및 홍보강화 등을 통해 예산의 불용 을 최소화할 것 | 192,300 | 140,900 | 211,800 | 190,600 |
| | 표지시설 | 표지시설 사업의 위탁사업비 집행 부진 관련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 을 집행할 것 | 51,896 | 51,098 | 51,962 | 55,175 |
| 해양 수산부 | 낚시산업 선진화 | 이차보전 예산 편성 시 자금수요 와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할 것 | 1,519 | 1,413 | 2,084 | 1,969 |
| | 항만물류정보 | 항만물류정보 사업 공공요금 예 산편성 시 집행가능한 적정 예산 만 반영할 것 | 8,042 | 7,897 | 9,192 | 7,709 |

| Hal | UMH | U2107 | 20 | 15 | 2016 | 2017 |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 관공선 건조 및 운영 | 관공선 건조 및 운영 사업의 과 도한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초년도에는 건조사업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설계비 및 적정 건조비 만을 반영할 것 | 13,685 | 9,784 | 13,063 | 31,380 |
| |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지속 여부와 예산 편성의 필요성 을 재검토할 것 | 120 | 74 | 120 | 120 |
|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 배합사료 공장 건립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의 수요와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 10,456 | 10,452 | 12,336 | 8,842 |
| |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 원양어선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금 리 인하, 이차보전사업으로의 변 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집행 가능성을 높이거나 연례적 인 집행부진, 향후 집행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동 사업 추진을 재 검토할 것 | 23,440 | 0 | 11,700 | 2,900 |
| | 마리나 항만 | 예산의 과다 편성 및 불용이 발생하 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 | 13,500 | 9,034 | 10,014 | 8,915 |
| 산림청 | 임업인재해복구 지원 |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 | 2,505 | 183 | 2,005 | 869 |
| [산업 통 상 | ·자원위원회] | | | | | |
| 산업 | 투자유치 기반 조성 |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의 최근 대규모 예산 불용을 고려하여 적 정 예산을 편성할 것 | 80,512 | 105,676 | 58,895 | 47,169 |
| 통상 자원부 | LPG 소형저장 탱크보급 | 향후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LPG 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 의 집행계획 및 집행가능성을 보 다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발생 | 11,615 | 11,583 | 7,100 | 4,650 |

| 하지 않도목 유의할 것 에너지절약 이내다진절약시설설치 사업의 실접 행이 부진한 내역사업은 다른 내 역사업과 통폐합하는 등 융자 수 요를 반영하도록 할 것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인턴 근무시점 을 앞당기거나 에산을 단계적(단턴 도에서 다년도)으로 편성할 것 연구장비공동 참 시업 수요 예측을 정밀히 하여 적 정 에산만을 계상할 것 기업청 인건비 책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을 방지할 것 이건비 책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을 방지할 것 이건비 책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을 방지할 것 기상으로 전성할 것 기상으로 전성할 것 기업청은 인력계획 수립 및 인건비 책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을 방지할 것 기상으로 전성할 것 기상으로 전성을 보려되었다면 대하여 재검토할 것 기상으로 제산을 편성함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 으로써 예산이 과다계상되어 다른 사업으로 조성 및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의 필요성을 제공하여 기원을 건성할 수입할 것 이원이로 조성 및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인기가사서비스 사업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등 사업의 만족도 및 집행론에 가장 기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입할 것 이원이로 전성할 것 이원이로 지원 사업 예산의 추계정확도 제고 및 집행적정성 지원 안집 및 집행적정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 형 및 설치 수요에 맞춰 적절한 안전관리 강화 가문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31,950 28,134 37,614 38,816 | 부처 | 사업명 | 117107 | 20 | 15 | 2016 | 2017 |
|--|---------|----------------|--------------------|-----------|-----------|-----------|-----------|
| 에너지절약 시설설치(용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의 실접 행이 부진한 내역사업은 다른 내 역사업과 통폐합하는 등 용자 수 요를 반영하도록 할 것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인턴 근무시점 을 앞당기거나 예산을 단계적(단턴 도에서 다년도)으로 편성할 것 연구장비공동 할 시작에 다년도)으로 편성할 것 16,540 16,540 18,674 14,700 전상공인지원 원자를 참여하는 등 용자 수 20에는 계상할 것 16,540 16,540 18,674 14,700 전상공인지원 원자를 참여하는 등 생지할 것 16,540 16,540 18,674 14,700 전상공인지원 원자를 참여하는 점점 기상을 전기하여 분용 원가할 것 16,540 16,540 18,674 14,700 전상공인지원 원자를 사업의 폐지 등 사업원들에 대하여 제검토할 것 1,555,000 1,665,000 | 十勺 | 시 합 경 |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에너지결약 이 부진한 내역사업은 다른 내 역사업설치(용자) 역사업과 통폐합하는 등 용자 수 요를 반영하도록 할 것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인턴 근무시접 을 앞당기거나 예산을 단계적(단턴 도에서 다년도)으로 편성할 것 연구장비공동 활용지원사업 정 예산만을 계상할 것 16,540 16,540 18,674 14,700 전비 책장을 철저히 하여 불용을 참 방지할 것 인건비 핵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을 방지할 것 인건비 핵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을 방지할 것 14,700 학자를 사업의 폐지 등 사업 학원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1,555,000 1,605,0 | | | | | | | |
| 지설설치(용자) 역사업과 통쾌합하는 등 용자 수 요를 반영하도록 할 것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인턴 근무시점 등,000 5,000 10,000 5,000 연구장비공동 환용지원사업 경 예산만을 개상할 것 연구장비공동 참임권에는 계상할 것 인건비 원리비 취상을 전명히 하여 적 정 예산만을 개상할 것 인건비 원리비 취상을 전명히 하여 불용 용,782 77,224 84,807 85,758 을 방지할 것 소상공인지원 인건비 책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 용,0787 77,224 84,807 85,758 을 방지할 것 소상공인지원 인건비 책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 용,0787 77,224 84,807 85,758 을 방지할 것 소상공인지원 인건비 책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 용,0787 77,224 84,807 85,758 을 방지할 것 소상공인지원 인건비 대하여 재견토한 것 [보건복지위원회] *********************************** | | 3. 3. 3 = 3.43 | | | | | |
| 지설설치(농자) 역사업과 통쾌합하는 등 용자 수 요를 반영하도록 할 것 집행륜 제고를 위해 인턴 근무시점 을 앞당기거나 예산을 단계적(단년 도에서 다년도)으로 편성할 것 연구장비공동 참용지원사업 청 예산만을 계상할 것 인건비 경용을 철저히 하여 불용을 함지함 수 없는 전환대를 사업의 폐지 등 사업수 이 기업청 원자 기계 등 사업수 이 기계 등 사업한에 대하여 제검토할 것 소상공인지원을 하지 함께 관리시를 사업의 폐지 등 사업한에 대하여 제검토할 것 [보건복지위원회] | | | | 500,000 | 480,848 | 500,000 | 350,000 |
| 청입사업화지원 | | 시설설치(융자) | | | ŕ | | ĺ |
| 중소 기업청 연구장비공동 환영사업화지원 을 앞당기거나 예산을 단계적(단년 도에서 다년도)으로 편성할 것 연구장비공동 활용지원사업 경 예산만을 계상할 것 16,540 18,674 14,700 전비 책정을 철저히 하여 보용 용사용이지원 인건비 책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 용사용이지원 유자 업건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1,600,500 1,400,500 1,400,500 1,605,000 1 | | | | | | | |
| 중소 기업청 연구장비공동 사업 수요예측을 정밀히 하여 적 16,540 16,540 18,674 14,700 환용지원사업 정 예산만을 계상할 것 | | | | | | | |
| 중소 기업청 원유지원사업 정 예산만을 계상할 것 16,540 16,540 18,674 14,700 경 예산만을 계상할 것 16,540 16,540 18,674 14,700 전반에 제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을 받지할 것 16,410 제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을 받지할 것 1,555,000 1,403,800 1,403,800 1,403,800 1,403,800 1,403,800 1,403,800 1,555,000 1,403,800 1,555, | | 창업사업화지원 | ` | 5,000 | 5,000 | 10,000 | 5,000 |
| 충소 기업청활용지원사업정 예산만을 계상할 것16,54016,54018,67414,700인건비중소기업청은 인력계획 수립 및 인건비 책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 을 방지할 것80,78777,22484,80785,758소상공인지원 융자세부요건 수정에도 집행률이 낮 은 전환대출 사업의 폐지 등 사 업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1,809,5001,423,8001,555,0001,605,000[보건복지위원회]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소사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 으로써 예산이 과다계상되어 다 른 사업으로 조정 및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18,63617,282보건 복지부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자검토하고, 동 사업의 만족도 및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2,3632,3632,363626이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화도 제고 및 집행적정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3,049,3733,141,2123,106,5813,129,242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강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 황 및 설치 수요에 맞춰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31,95028,13437,61438,816 | | | 도에서 다년도)으로 편성할 것 | | | | |
| 중소 기업청 인건비 정 예산만을 계상할 것 중소기업청은 인력계획 수립 및 인건비 책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 80,787 77,224 84,807 85,758 을 방지할 것 세부요건 수정에도 집행률이 낮 은 전환대출 사업의 폐지 등 사 업천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1,605,000 | | 연구장비공동 | 사업 수요예측을 정밀히 하여 적 | 16 540 | 16 540 | 18 674 | 14.700 |
| 기업청 인건비 | | 활용지원사업 | 정 예산만을 계상할 것 | 10,540 | 10,540 | 10,074 | 14,700 |
| 인건비 | _ | | 중소기업청은 인력계획 수립 및 | | | | |
| 소상공인지원 응자 세부요건 수정에도 집행률이 낮은 전환대출 사업의 폐지 등 사업간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1,505,000 1,403,899 1,555,000 1,605,000 업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1,605,000 업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1,605,000 1,403,899 1,555,000 1,605,000 1,403,899 1,555,000 1,605,000 1,403,899 1,555,000 1,605,000 1,403,899 1,555,000 1,605,000 1,403,899 1,555,000 1,605,000 1,403,899 1,555,000 1,605,000 1,403,899 1,555,000 1,605,000 1,403,899 1,555,000 1,605,000 1,403,899 1,555,000 1,605,000 1,605,000 1,403,899 1,555,000 1,60 | 1180 | 인건비 | 인건비 책정을 철저히 하여 불용 | 80,787 | 77,224 | 84,807 | 85,758 |
| 조상공인지원 용자 인접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1,800,500 1,403,800 1,555,000 1,605,000 | | | 을 방지할 것 | | | | |
| 응자 임전한대출 사업의 폐지 등 사 1,800,500 1,420,800 1,555,000 1,605,000 1,605,000 1,405,800 1,505,000 1,605 | | 2 2 7 0 7 0 | 세부요건 수정에도 집행률이 낮 | | | | |
| [보건복지위원회] - | | | 은 전환대출 사업의 폐지 등 사 | 1,809,500 | 1,493,899 | 1,555,000 | 1,605,000 |
|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수행시 사전에 철저한 수요 감염병 관리시 설 및 장비 확충 으로써 예산이 과다계상되어 다 른 사업으로 조정 및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의 필요성을 지자체보조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 먹을거리 인언관리 강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자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지구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 | · 융자 | 업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 | | |
| 보건 복지부 보건 복지부 유명 관리시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 설 및 장비 확충 으로써 예산이 과다계상되어 다른 사업으로 조정 및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의 필요성을 지자체보조 전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의 추계정확도 제고 및 집행적정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설치 수요에 맞춰 적절한 안전관리 강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 [보건복지 | · 위원회] | | | | | |
| 보건 복지부 보건 복지부 모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연유아보육료 지원 연리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연건인의 데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31,950 28,134 37,614 38,816 | | |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 | | | |
| 보건 복지부 보건 복지부 모인돌봄서비스 지역 및 사업의 및 보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만기가사서비스 사업의 필요성을 자격토하고, 동 사업의 만족도 및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 역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의 추계정확도 제고 및 집행적정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 항 및 설치 수요에 맞춰 적절한 안전관리 강화 어린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31,950 28,134 37,614 38,816 | | | 사업수행시 사전에 철저한 수요 | | | | - |
| 보건 복지부 보건 복지부 모인돌봄서비스 있는록 주의할 것 | | 감염병 관리시 |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 | 10.404 | | | |
| 보건 복지부 모인돌봄서비스 다입의 필요성을 보고 | | 설 및 장비 확충 | 으로써 예산이 과다계상되어 다 | 18,636 | 17,282 | - | |
| 보건 복지부 모인돌봄서비스 지검토하고, 동 사업의 만족도 및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의 추계정확도 제고 및 집행적정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 악관리 강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31,950 28,134 37,614 38,816 | | | 른 사업으로 조정 및 불용되지 | | | | |
| 복지부 모인돌봄서비스 지검토하고, 동 사업의 만족도 및 지자체보조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의 추계정확도 제고 및 집행적정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 왕 및 설치 수요에 맞춰 적절한 안전관리 강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31,950 28,134 37,614 38,816 | | | 않도록 주의할 것 | | | | |
| 지자체보조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고,363 2,363 2,363 2,363 (26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 (3040,373 3,141,212 3,106,581 3,129,242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어린이 먹을거리 항 및 설치 수요에 맞춰 적절한 안전관리 강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31,950 28,134 37,614 38,816 2,363 2, | _ | |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의 필요성을 | | | | |
| 지자체보소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석 대책을 수립할 것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의 추계정확도 제고 및 집행적정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목시무 | 노인돌봄서비스 | 재검토하고, 동 사업의 만족도 및 | | |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의 추계정확도 제고 및 집행적정성 3,049,373 3,141,212 3,106,581 3,129,242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 학 및 설치 수요에 맞춰 적절한 안전관리 강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31,950 28,134 37,614 38,816 | | 지자체보조 |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 2,363 | 2,363 | 2,363 | 626 |
| 영유아보육료 지원 추계정확도 제고 및 집행적정성 3,049,373 3,141,212 3,106,581 3,129,242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 이약품 악전관리 강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31,950 28,134 37,614 38,816 | | | 대책을 수립할 것 | | | | |
| 지원 주계성확도 제고 및 집행석성성 3,049,373 3,141,212 3,106,581 3,129,242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 어린이 먹을거리 황 및 설치 수요에 맞춰 적절한 안전관리 강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31,950 28,134 37,614 38,816 | | ~ ~ ~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의 | | | | |
|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 식품 이란이 먹을거리 황 및 설치 수요에 맞춰 적절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31,950 28,134 37,614 38,816 | | | 추계정확도 제고 및 집행적정성 | 3,049,373 | 3,141,212 | 3,106,581 | 3,129,242 |
| 식품 의약품 악전관리 강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31,950 28,134 37,614 38,816 | | 지원 |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 | 3,100,301 | |
| 의약품 이전이 익물거리 왕 및 설치 구요에 갖춰 직절만 31,950 28,134 37,614 38,816 안전관리 강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 | | | | | | 38,816 |
| _{아저처} 안전관리 강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 | | 황 및 설치 수요에 맞춰 적절한 | 31,950 | 28,134 | 37,614 | |
| 인선석 용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 | |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 | | | | |
| | 안신서 | | 용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 | | |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 15 | 2016 | 2017 |
|-------|----------------------------|---|---------|---------|---------|---------|
| | | VI OTT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환경노동 | ;위원회] | | | | | |
| | 하수관거 정비 | 사업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반영함으로 써 예산 확정 후 교부액 조정을 최소화할 것 | 855,213 | 855,213 | 772,991 | 726,841 |
| | 수도권 대기 개선 추진대책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LPG엔진 개조 사업은 수요 감소 를 고려하여 사업목표를 축소 조 정할 것 | 1,740 | 316 | 348 | - |
|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 환경부는 서울시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을 편성하고, 구매보조금 단가, 전기버스 및 전기화물차의 보급 정책 등을 재검토하여 전기차 보 급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 78,779 | 78,776 | 148,524 | 264,274 |
| 환경부 |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등 을 통해 생태탐방연수원 건립 예 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 20,880 | 20,816 | 19,100 | 15,920 |
| | 국토생태 네트 워크 구축 |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 록 하고,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 업예산은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 20,169 | 19,379 | 18,965 | 15,865 |
| | 화학물질관리 체계 선진화 | 연구용역 계약 지연 등에 따른 과도한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 지 않도록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역사업 정비를 통해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한 후 그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할 것 | 14,046 | 11,970 | 15,455 | 30,095 |

| Hal | UAR | 1174.0.7 | 20 | 15 | 2016 | 2017 |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 환경부는 석면 제거 공정에 소요 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하역 사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사업 첫 해는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만 반영하는 등 집행 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8,407 | 8,407 | 6,699 | 8,303 |
| | 상·하류 협력 증진사업 |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추진 단계에 맞게 실집행 가능한 수준 의 재원 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기 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 4,436 | 99 | 5,800 | 5,510 |
| | 석면피해구제 급여 | 실제 발생 환자 수를 토대로 한 시계열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제급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 10,700 | 7,816 | 9,514 | 11,949 |
| | 공단폐수처리 시설 확충 | 예산 불용과 전용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 | 219,294 | 178,410 | 155,442 | 126,800 |
| |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 진 공정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융자금을 편성할 것 | 35,247 | 10,480 | 8,557 | 8,568 |
| |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불용액이 매우 높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12,330 | 1,807 | 51,507 | 46,356 |
| 고용 노동부 | 중소기업근속 장려금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근속장려 금 사업에 있어 향후 집행가능한 수준보다 과도한 예산편성과 목 표인원이 설정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 | 1,496 | 471 | - | - |
| | 임금피크제 지원금 |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런하고 과 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 록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 | 31,999 | 17,715 | 52,075 | 49,680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20 | 15 | 2016 | 2017 |
|---------------|---|--|---------------------|-----------|-----------|-----------|
| 十八 | 71 日 0 | VI 9TT I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안 |
| [국토교통 | 위원회] | | | | | |
| | 주거급여 지원 | 주거급여 지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 1.123.073 878.899 1 | | | |
| | 비주거용부동산 가격조사 | 복지시설 거주자나 소재불명자 등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 규모를 관 련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파악 하는 등 주거급여 지출 추계의 정 확성을 제고할 것 | 1,500 | 97 | 1,400 | 1,700 |
| | 부항댐건설(보조), 성덕댐건설(보조), 한탄강댐건설(보 조), 기존댐주변 지역정비사업 | 국토교통부는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댐주변지역 정 비사업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 도록 주의할 것 | 16,300 | 16,250 | - | - |
| 국토 | 지방하천정비 |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현행 예산 편성 방식 (총액편성)의 개선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마런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 720,400 | 720,400 | 638,350 | 570,000 |
| 교통부 - - | 고속도로건설 사업 | 향후 고속도로 건설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것 | 1,695,665 | 1,677,665 | 1,370,521 | 1,297,126 |
| | 산업단지 진입 도로 지원사업 | 사전에 산업단지진입도로의 수요 를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 | 796,051 | 665,640 | 494,795 | 379,380 |
| | 지하철건설 지원 | 지하철건설지원 사업의 진행상황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세부사 업별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할 것 | 627,440 | 627,440 | 427,389 | 148,520 |
|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철저하게 집행 관리하여 국가지 원지방도건설 신규 사업의 실집 행실적을 제고할 것 | 545,043 | 543,615 | 495,070 | 445,652 |

|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 | 20 예산 | 15 결산 | 2016 예산 | 2017 예산안 |
|------------|-------------------------------|--|----------|----------|------------|--------------------|
| | 영구임대·국민 임대 등 공공 주택 건설사업 |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과다한 불 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 | | 7,749,413 | |
| 행정심 복합되 | 대통령기록관 건립 | 완공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정산소요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 31,033 | 25,671 | 8,237 | - |
| 건설청 | 소방서 청사 건립 |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 | | 126 | - | - |
| [여성가족 | 부] | | | | | |
| 여성 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 2017년도 예산 편성 시 이와 같은 지적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가족보호시설에 대한 실수요 및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에 맞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것 | 456 | 310 | 152 | - |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별표 3] 반복 지적된 사항 내용 요약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대통령비서실 및 | 및 국가안보· | 실 |
| | 총액인건비 | 2014 | ○ 향후 국외업무여비 예산 편성시 집행실적에 맞게 예산액을 조정할 것 |
| | 비대상 기본경비 | 2015 | 국외업무여비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실 적인 수요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할 것 |
| 75100 | 그저며기기기 | 2014 | ○ 향후 일반수용비 적정 집행규모를 예측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것 |
| 국회운영 위원회 (3건) | 국정평가관리 | 2015 | ○ 향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적정 집 행규모를 예측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것 |
| (5 %) | [국가인권위원회] | | |
| |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운영 | 2013 | ○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권강사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인권강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할 것 |
| | | 2015 |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권강사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인권강사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 및 추가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 | [법무부] | | |
| | 국가배상금 | 2013 | ○ 국가배상금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비비 배정·사용 지양 필요 |
| | 기메당 리 | 2014 | ㅇ 국가배상금 적정 예산 확보 필요 |
| | 716 | 2015 | ○ 국가배상금 적정 수준 예산편성 및 전년도 미지급 액 최소화 필요 |
| ЩличШ | | 2013 | o 교정기관 공공요금 적정예산 편성 필요 |
| 법제사법 위원회 | 교정기관 공공요금 | 2014 | ○ 교정기관 공공요금 적정예산 반영 및 자체 절감대 책 시행 필요 |
| (11건) | 2011 | 2015 | ㅇ 교정기관 공공요금 및 구료비 적정예산 편성 필요 |
| | [법제처] | | |
| | 법제정비 | 2014 | ○ 국민법제관 구성 다양화 및 활동 부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 H/M/Q H | 2015 | 국민법제관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민법제관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대법원] | | |
| | 면허료 및 | 2014 | ○ 향후 수납실적에 근거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 을 책정할 것 |
| | 수수료 | 2015 | 실제 수납실적에 근거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을 책정할 것 |
| | | 2014 | 사법시험 폐지 및 합격자 감소 추세에 맞추어 교수 및 교직원의 정원 및 현원을 조정하고 인건비의 이·전용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사법연수원 인건비 | 2015 | 사법시험 합격자 및 연수생 수의 감소 추세에 따라 실제 수요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전용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로스쿨 실무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 | 양형제도개선 | 2014 | 양형위원회의 활동내역과 향후 활동 계획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 각종 회의 관련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추어 편성하고, 해당 회의를 활성화하여 내실 있게 집행할 것 |
| | 지원 | 2015 | 양형위원회 회의 관련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추어 감액 편성하고 회의를 활성화하여 내실 있게 집행 할 것 |
|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 2014 | ○ 사업비의 불용 및 조정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할 것 |
| | | 2015 | 사업비의 조정 및 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소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편성할 것 |
| | 등기소신증축 | 2014 | 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철저히 하고, 회 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 |
| | | 2015 | 등기소신증축사업 추진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철저히 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전용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일반재판운영 | 2013 | 사건번호나 피고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검색조건에서 제외하고 키워드 검색, 기간 검색, 적용법조 검색 등 검색조건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민이 판결문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지원 | 2014 | o 형사판결문 공개 및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 |
| | | 2015 | 판결문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실명처리 기준(대법원예규)을 재검토하고, 판결문열람제도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
| | [감사원] | | |
| | 감사활동경비 | 2014 | 감사원의 처분 요구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할 것 공정하고 정확한 감사로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피감기관이 감사원의 징계요구대로 징계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2015 | 감사원의 처분 요구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감사로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피감기관이 감사원의 징계요구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헌법재판소] | | |
| | 재판자료확충 (한국 헌법재판 | 2014 | 한국 헌법재판 연구자료 지원 사업 중 '시중 판매 도서'를 구입하여 외국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 헌 법재판제도를 객관적으로 알리는데 필요한지 신중 검토할 것 |
| | 연구자료 지원) | 2015 | 한국 헌법재판 연구자료 지원사업 중 시중 판매 도서를 국가예산으로 외국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중단하는 등 재검토 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 [국무조정실] | | | |
| | 비정규직 | 2013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은 중·장기 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제의 비정규 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
| | 정규직 전환 | 2015 |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개선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정무 | 초과근무수당 | 2014 | 초과근무수당 지급 필요 연구회와 연구기관은 자체수입 중에서 초과근무수 당 지급재원을 확보하여 비정규직부터 점차 확대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 |
| 위원회 (18건) | | 2015 | 초과근무수당 지급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초과근 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할 것 | |
| | 과도한 수탁과제 수주 | 2014 | 과다한 수탁용역사업 수행 등에 따른 일반연구사업 집행부진 수탁사업의 양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함으로써일반연구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 2015 | 과도한 수탁과제 수주의 원인인 자체수입산정방식 및 능률성과급 제도 개선 자체수입산정방식을 직전년도 자체수입만을 기준 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초과수입이 발 생해야 지급할 수 있는 능률성과급을 자체수입예 산에 일정비율 편성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개선방 안을 마련할 것 |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간접비 계상비율 기준 | 2014 | 연구기관의 간접경비 편성비율에 대한 통합된 기준정립 필요 수권 예산과 실제 결산 시의 간접비율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편성비율에 대한 통합된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은 마련할 것 |
| | 마련 필요 | 2015 | 출연연구기관의 수탁사업 수입결산 시에 간접비계상비율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수탁사업 수입 결산 시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접비 계상 기준을 마련할 것 |
| | [금융위원회] | | |
| | 71717 (1101) | 2014 | ㅇ 과오납 과징금 환급 필요 |
| | 과징금(세입) | 2015 | ○ 과다부과된 과징금 환급 필요 |
| | 민간출연금 | 2014 | ○ 시장안정 P-CBO 안정적 재원 마련 필요 |
| | (신용보증기금) | 2015 | ○ 시장안정 P-CBO 안정적 재원 마련 필요 |
| | 기술평가 | 2014 | ○ 기술평가 이차보전사업의 낮은 집행률 및 법적근 거 미비 |
| | (기보) | 2015 | ○ 기술평가 이차보전사업의 부적절한 편성 및 집행 |
| | 저축장려금 /노이기모드 | 2014 | o 부정가입자 철저 단속 필요 |
| | (농어가목돈 마련저축기금) | 2015 | o 부정가입자 증가의 문제점 |
| | 일반회계 | 2013 | ○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필요 |
| | 전입금 (공적자금상환 | 2014 | ㅇ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한 국채원금 상환 필요 |
| | 기금) | 2015 | ㅇ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한 국채원금 상환 필요 |
| | 이거비 | 2014 | ○ 인건비 부족에 따른 과도한 이·전용 시정 필요 |
| | 인건비 | 2015 | ○ 인건비 부족에 따른 과도한 이·전용 시정 필요 |
| | 51110717171 | 2014 | o 연례적인 임차료 부족 |
| | 청사유지관리 | 2015 | ○ 임차료 부족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권익개선 | 2014 | ○ 110콜센터 상담사 급여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창구운영 | 2015 | ○ 110콜센터 상담사 급여수준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국가보훈처] | | |
| | 기타경상이전 수입 | 2014 | 부정수급의 사후적발보다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보훈급여 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 구할 것 |
| | Tu | 2015 | 보훈급여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부정수급 방지대 책과 행정착오에 의한 지급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 | 호국보훈의 달행사 | 2014 | 총리 담화문을 신문광고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해당 예산을 호국보훈 홍 보비로 재편성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2015 | 국회의 승인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총리 담화문을 신문광고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해당 예산을 호국보훈 홍보비로 재편성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2013 | 88골프장 매각 문제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한 후 협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 |
| | | 2014 | 88골프장 매각은 헐값매각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고, 매각전이라도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것 |
| | | 2015 | ○ 88골프장 매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안을 마련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광복회관 | 2014 |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로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재건축 | 2015 | ○ 광복회관 건립사업이 지연되어 연례적 예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
| | 1 1 - 71 - 11 - 11 LL | 2014 | 공모를 통해 다수의 연구자로부터 다양한 정책 제언을 얻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 보훈정책개발 | 2015 | ○ 연구용역 추진 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경쟁 방 식으로 용역수행자를 선정할 것 |
| | 지방보훈회관 건립 | 2013 |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 | | 2014 | ○ 부지 및 지방비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을 우선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할 것 |
| | | 2015 | 부지 및 지방비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우선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한 보조금 분할 교부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기획재정부] | | |
| | 지역발전 | 2013 | ㅇ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및 재원확보 방안 강구 |
| | 특별회계 | 2014 | ㅇ 타 회계 전입금 외 재원 확보 방안 강구 |
| | 일반 | 2015 | ○ 타 회계 전입금 등 재원 확보 방안 강구 |
| 기획재정 위원회 (19건) | 재정사업 | 2014 | ○ 심층평가 사업의 과제 선정 지연 |
| | 심층평가 | 2015 | ○ 심층평가 과제 지연에 따른 이월 과다 |
| | IDB 연차총회 | 2014 | ○ 위탁사업비 집행부진 및 예산 과다 편성 |
| | 개최 | 2015 | ○ 위탁사업비 등 행사비용 과다추계 |
| | 한국수출입 은행 출자 | 2014 | 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 회복 필요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필요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 2013 | ○ 기준금리의 합리적 예측에 따른 과다불용 시정 필 요 |
| | 국채이자상환 | 2014 | ○ 기준금리의 합리적 예측에 따른 과다불용 시정 필 요 |
| | | 2015 | ○ 기준금리 예측 부정확에 따른 연례적인 예산 과다 계상 |
| | 공공자금관리 | 2014 | ㅇ 중장기적으로 융자계정을 총괄계정으로 통합 필요 |
| | 기금 융자계정 | 2015 | ○ 융자계정 운용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한 검토 필 요 |
| | 복권기금 일반 | 2014 | o 온라인복권시스템 수출 적극 추진 필요 |
| | 숙전기급 할만 | 2015 | o 온라인복권시스템 수출 적극 추진 필요 |
| | 외국환평형기 | 2014 |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비율 제고 필요 |
| | 기타경비 | 2015 | ○ 외화대출 규모 최소화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 | | 2013 | o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형식적 운영관행 시 정 필요 |
| | | 2015 | ○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
| | 일시차입금 | 2013 | o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 최소화 |
| | 이자상환 | 2015 | 원칙적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하되 예외적으로 일시 차입 실시 |
| | [국세청] | | |
| | 징수위탁수수료 | 2013 | ㅇ 체납징수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 필요 |
| | 0771777 | 2015 | ㅇ 국세 징수위탁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 |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현금영수증제도 | 2014 |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필요 |
| | | 2015 |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필요 |
| | | 2014 | ㅇ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적정예산 편성 필요 |
| | 활성화 지원 | 2015 | ㅇ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연례적 이전용 문제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관세청] | | |
| | 4세대 국가관세 | 2013 | 국종망 구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 | 종합정보망 구축 | 2015 | 정보화 사업 추진에 신속한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으로 적시에 예산 집행 필요 |
| | | 2013 | o 가산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 가산금(세입) | 2015 | 체납 및 가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 | [조달청] | | |
| | 조달정보화 (정보화) | 2013 |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 및 전망 등에 대한 검 토를 강화하여 집행이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 고, 낙찰차액 등의 불용 예상액을 임의적으로 활용 하여 사업을 증액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 | | 2014 | 하도급지킴이의 시스템 개선·보수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하도급지킴이 이용 유인을 높이고, 민간·지자체 등이 이미 구축·운영 중인 개별 시스템과하도급지킴이 간의 관계 정립 방안을 마련할 것 |
| | | 2015 | 하도급지킴이프로그램기능강화등이용률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강구할것 사전에사업의필요성을검토하여예산을편성하고,예산의범위내에서계획된정보화사업을추진할것 |
| |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 2013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집행예상액을 면밀하게 추정하여 적 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
| | | 2015 |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관련 검토수당 등을 편성함에 있어, 적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회전자금 전출금 | 2014 | 2018년까지의 비축자금 조성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조성된 비축자금을 활용하여 비축물자 보유량이 목표재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비축물자 확보사업에 내실을 기할 것 |
| | | 2015 | 우리나라원자재시장개방과이에따른원자재가격변화등을고려하여비축물자재고목표를설정하는등비축물자사업계획을적정하게조정할것 원활한원자재수급을위해목표재고량에따라비축물자를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
| | [통계청] | | |
| |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 2014 |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에 집중된 위탁 사업비의 수의계약문제 |
| | 등 위탁사업 전반 | 2015 | 소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한 위탁사업 편중 및 수의계약 과다 |
| | [미래창조과학부] | | |
| | 과학기술진흥 기금 | 2013 | ○ 일부 기금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건전성 확보 방 안을 마련할 것 |
| 미래창조 | | 2015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주요사업 예산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감액되어 과학기술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 하지 않도록, 신규재원 창출 등 재원고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 방 <u>송통</u> 신정책 연구 | 2014 | ○ 방송통신분야의 연구과제 지언이라는 사업 목적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도록 주의할 것 |
| (15건) | | 2015 |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의 추진 시에 유용한 연구 과제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사이버 보안위협 예방체계 구축 | 2014 | ○ 신규SW 취약점 신고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것 |
| | | 2015 | ○ SW신규취약점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벌금 및 과료 | 2013 |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약자 등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 징수 외의 적정한 조치를 마련할 것 |
| | | 2015 | ○ 징수불능 불납액의 결손처리 근거 마련 등 불법스 팸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자 관리 등을 효율화하는 개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
| | 우정정책연구 개발(정책연구 | 2014 | 우정정책 연구용역 심의회 구성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일반경쟁계약이 가능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지양할 것 |
|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 | 2015 | 우정사업본부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서면방법 위주의 심사를 지양하도록 주의할 것 |
| | 연구실안전 환경구축 국가과학기술 | 2013 | 연구기관은 인건비 1%이상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으로 준수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동기준 미준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 |
| | | 2015 |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사업비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수행 조직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을 전담조 직 또는 각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 2014 | ○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구수당을 기관별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 2015 | 주요사업을 통하여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객관적 산출기준 마련을 통해 출연연구기관 간 과도한 연 구수당 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 2014 | ○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 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
| | | 2015 |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지원하는 출연금의 연내집 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집 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개인정보보호 | 2014 | 국외에 유출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
| | 강화 | 2015 | ○ 미국과의 공조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 |
| |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 2014 | 아리랑 TV에 대한 감독 및 예산지원 기관의 불일 치 해소 방안 및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해외방송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
| | 국제 6 등 시전 | 2015 | 국제방송교류재단 운영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
| | 방송사업자 부담금 | 2013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 전기금 징수를 검토할 것 |
| | | 2015 | ○ 종편·지상파 등 방송사업자 간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구성할 것 |
| | 시청자권익 보호 활동지원 | 2013 |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사업 준비 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 | | 2014 | 연례적인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센터 건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 | | 2015 |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할 것 |
| | KBS 재난방송시스템 | 2014 | ○ 재난방송 관련 사업의 효과적 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 |
| | 지원 | 2015 | ○ KBS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 | [원자력안전위원 | | |
| | 세입 | 2014 |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2015 |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의 불일치가 최소화되도록 시정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원자력안전 | 2014 | 1차년도 연구종료 시점을 회계연도 말로 강제하는등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의 불일치 해소 방안을 강 구할 것 |
| | 연구개발 | 2015 | ○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기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교육부] | | |
| | 한국장학재단 | 2014 | 한국장학재단은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과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할 것 |
| | 출연 | 2015 | ○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출연 예산의 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 |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출연 | 2014 | ○ 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 및 자체수입 확대방 안 등을 통해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 |
| | | 2015 | 자체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출연금을 합리적으로 산정반영하고 자체수입 현황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조정할 것 |
| 교육문화 | 회관운영사업 | 2014 | ○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하여 예산계획 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 |
| 체육관광 위원회 (34건) | | 2015 |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계획변경 및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동산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예산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
| | 여유자금운용 | 2013 | ○ 사학연금의 투자실적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할 것 |
| | | 2014 | ○ 리스크 관리 등 자금운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할 것 |
| | | 2015 | ○ 사학연금공단은 자금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대책 을 마련할 것 |
| | | 2013 |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집행용도를 재해복구 외에 재해예방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 |
|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2014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집행용도를 재해예방을 포함 하여 본래의 목적으로 최대한 사용될 수 있는 방 안 마련 |
| | | 2015 |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사전 재난 예방 용도 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 2013 |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 |
| | 국가시책 | 2014 |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 |
| | 특별교부금 | 2015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집행결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 |
| | 국립대병원 | 2014 | 자부담분 집행이 부진한 병원에 대해서는 향후 신 규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 | 지원 | 2015 | 자부담 이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차년도 국고지원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할 것 |
| | 동북아역사 재단 지원 망춤형 국가 | 2014 | ○ 당초 사업 계획과 무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지 말고,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 |
| | | 2015 | 사업의 목적과 관계없는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 |
| | | 2014 | ○ 교외 근로 의무 비율을 상향하는 등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
| | 장학금 지원 | 2015 | o 교외 근무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 | 국립대학 실험실습 | 2014 | 집행지침에 대한 교육강화, 집행상황 수시점검, 집 행제외 기자재 구매 관리 등 방안을 통해 집행관 리를 강화할 것 |
| | 기자재 확충 | 2015 | ○ 사업 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 를 강화할 것 |
| | | 2014 | ㅇ 고교 무상교육 실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 | 고교무상교육 | 2015 |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고교 무상교육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 |
| | | 2014 | ○ 예산 편성시 인건비시설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불용 최소화 |
| | 보통교부금 | 2015 | ○ 이월 및 불용 발생 최소화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2018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 | 2013 | 사후활용방안 및 배후도시 건설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등 대회준비 및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관광·환경 등 제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범국가적인 종합 축제가 될수 있도록 하며 철저한 현정조사 등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 | | 2014 | 빠른 시일 내에 사후활용방안을 결정하고, 체계적 점검 등 공정관리 강화 노력을 기울일 것 |
| | | 2015 | ○ 올림픽경기장 시설의 효율적인 사후 활용방안 마 련 필요 |
|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 2013 |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필 요 |
| | | 2014 | 지자체의 사업추진 가능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이후에도 사업 집행실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 | | 2015 |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 | | 2013 |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과태료 미수납자에 대한 재 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태료 징수실적을 제고하 기 위하여 노력할 것 |
| | 과태료 | 2014 |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수납이행에도 추적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관련 법률 개정이외 에도 과태료 수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2015 | ○ 미수납액 회수 방안 필요 |
| | | 2014 | ㅇ 관광산업 영세업체 지원대책 등 마련할 필요 |
| | 관광산업융자 지원 | 2015 | 융자금의 불용이 없도록 집행률 제고 대책을 강구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관광업체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2014 |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의 사전행정절차이행 점검 등 자치단체 실집행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 | | 2015 | 사업계획 및 사업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사전행정 절차 이행 여부 점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며, 2회 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 | 2013 | 영업손실 보상, 부지 유상 사용 등 사업부지 사용 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 | 남한강예술 특구조성 문화예술진흥 기금 재원 확보 방안 관련 | 2014 | 영업손실 보상, 부지 유상 사용 등 사업부지 사용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방안에 따라 연수원이 민간매각될 경우 예술특구가 수익사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2015 | 더 이상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바코와 토지사용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 만약 사업 추진이 안 된다면 사업 시행을 전면 백지화 하여 취소하던지, 아니면 미술산업의 발전 및 예술 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다른 장소를 물색하 여 미술 특구를 새롭게 조성할 것 |
| | | 2014 | 뉴서울CC 매각은 기금 적립금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재검토하고, 일반회계 또는 타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 등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자체 수입원을 다각화할 것 |
| | | 2015 | ○ 2017년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보 방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문화재정2% 달성관련 | 2014 | 문화재정 분류기준이 적정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실 질적 이행을 위하여 문화재정 2% 달성 노력을 기 울일 것 |
| | | 2015 | ○ 문화재정과 연관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문화재정 2%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방송영상 콘텐츠해외 진출지원 | 2014 | 수출용 방송영상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과다혜택을 방지하고 형평성 있는 국고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것 |
| | | 2015 | 기술료 징수 대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고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수출용 방송영상콘텐츠 재제작 지원작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료 차등 징수와 5,000만원 미만 지 원작품의 기술료 면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것 |
| | | 2013 | ○ 향후 부지확보, 지방비확보 여부 등 연내 집행가능 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할 것 |
| | 예산 집행의 효율성 관련 | 2014 | 보조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지확보 등 제반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 교부 시에는 지방비 확보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 |
| | | 2015 | 신규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70% 정도로 나타나 전체 예산에 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 2014 | ○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개정,예산 확대,찾아가는 복지서비스,예술활동 증명 간소화,타 부처와의 공조 계획등 대안을 마련할 것 ○ 서류제출 요구가 많고 사업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받은 등 개선이 필요하므로,사업 분야별로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 | | 2015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을 보건복지부 및 보육 육센터와 연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득별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 및 홍보 강화가 필요 |
| | 의료관광육성 | 2014 | 의료관광 육성 사업 보건복지부 해외환자 유치사 업과 중복 문제 등이 나타났으므로 의료관광 육성 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것 |
| | | 2015 |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예산 증액 편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의료관광을 육성하고,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방안을 적극 강구하며,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중복을 해소하고 협업체계를 강구할 것 |
| | | 2013 | 종교문화시설 건립 보조금사업 지연대책 마련 필요 |
| | 종교문화시설 | 2014 | 사전 사업계획 검토를 면밀히 하는 등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 | 건립 | 2015 | 사업계획의 집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등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천안유도연수원 건립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 | 해외 작은 도서관 조성 | 2014 | 사업의 목적에 맞게 국외여비를 집행하도록 하고,여러 사업의 국외여비를 중첩적으로 집행하지 않 도록 주의할 것 |
| | | 2015 | ○ 향후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외여비 집행 관 리를 철저히 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 2013 | 소외계층에게 효과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서비스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 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
| | | 2015 | 1인당 연간 5만원에 그치는 한도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소외계층의 관광 및 체육부문 소비 제고를위한 홍보 강화와 가맹점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며, 주민센터 협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해 대상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65세이상 수혜자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 | 토요문화학교 운영 | 2013 | 2014년 사업평가 시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표를 반영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참여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 | 2015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각 단체별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취약계층의 참여율을 제고할 것 |
| | [문화재청] | | |
| | 국외 문화 재환수 및 | 2014 | 불법 반출 국외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련 민간단체 및 외교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대 상 국외문화재를 선정하는 등 전략적 환수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활용 | 2015 | ○ 문화재 반출 방지 및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예 산·인력 확충 및 종합계획 필요 |
| | 기타경상이전 수입 | 2014 | 보조금 반환 미납 지자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일시 정지, 미수납액과 교부할 보조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동시에 체납된 국가채권 회수를 위한 실행계획을 제출할 것 |
| | | 2015 |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미납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일시정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과 실적보고서의 정 산시기 지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문화재 보수 정비(총액사업 ,자치단체자본 보조) | 2013 | 체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지자체의 실집행률 제고 및 문화재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조치 할 것 |
| | | 2014 |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이나 집행이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중단하거나, 삭감조치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시행토록 할 것 |
| | | 2015 | ㅇ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검토 필요 |
| | 문화재재난 안전관리 사적관리 문화유산관광 자원개발 | 2014 | 안전경비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안전관리인력 양성을 통한 목조문화재 안 전경비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2015 | 안전경비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소방 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채용 기준,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규제방안을 재검토할 것 |
| | | 2014 | 문묘 및 성균관 국가관리가 확정된 이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불용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 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2015 | 「국가재정법」제45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2013 | ○ 집행률 부진 및 지역적 편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 을 강구할 것 |
| | | 2015 | ○ 실집행 부진 및 과다 이월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외교부] | | |
| | 정상 및 총리외교 | 2014 | ○ 합리적인 예비비 배정 및 방만한 이·전용 재발방지 필요 |
| 외교 | | 2015 | ㅇ 정상외교 사업 예산의 과소 예측 시정 필요 |
| 통일 | | 2013 |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의 연례적 과소계상 |
| 위원회 (6건) | 면허료 및 수수료 | 2014 | 수입대체경비 및 수수료 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개선 필요 |
| | | 2015 | ○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개선 필요 |
| | [통일부] | | |
| | 통일준비위원회 | 2014 | 통일준비위원회의 여론수렴사업의 활성화 |
| | 운영 | 2015 | ○ 통일준비위원회의 자문·심의기구 역할에 맞는 운영 |
| | | 2013 |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예산불용의 재발방지 필요 |
| |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 2014 | ○ 지역통일관 전시환경 개선사업 집행관리 부실 |
| | | 2015 | ○ 지역통일관 운영 개선 |
| | 결청기HL 미사 | 2013 | ○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기준 완화 |
| | 경협기반 무상 | 2015 | ○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대책 수립 |
| | [민주평화통일자 | 문회의] | |
| | | 2013 | ○ 직능별 정책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 | 자문회의운영 | 2015 | 직능별 자문위원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구축하고 자율적 참여확대 방안을 강구하며, 지역회의 단위 의 직능별 정책회의를 활성화 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국방부] | | |
| | 일반회계 공통 | 2013 | ○ 연례적인 대규모 이전용 등 |
| | (이월 및 불용, 이전용 | 2014 | ㅇ 이전용 최소화 |
| | 최소화) | 2015 | ㅇ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
| | 장교/부사관인 | 2013 | ○ 부사관 인력의 정원내 운용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 |
| | 건비 | 2014 | ○ 정원 및 예산편성인원 내 인력운용 |
| 국방 | | 2015 | ㅇ 연례적인 정원 대비 인력 초과 운용 |
| 위원회 | 국특회계 공통 | 2013 | ○ 군용시설이전사업 집행률 제고노력 필요 |
| (4건) | (군사시설이전 사업 | 2014 | ㅇ 연례적인 군사시설 이전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 |
| | 집행률제고) | 2015 | ㅇ 극특 세출사업의 연례적인 세출예산 집행부진 |
| | [방위사업청] | | |
| | 차기수상함 구조함 | 2014 | 2017년 9월까지 기준미달 장비를 교체·장착할 계획 이지만, 수중탐색업무가 가능하도록 조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할 것. |
| | | 2015 | 차기수상함구조함에 장착되는 선체고정음탐기를 조속히 구매할 것. |
| | [행정자치부] | | |
| |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운영 | 2014 | ○ 지방이양사무의 적극적인 이양 추진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 |
| | | 2015 | ○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및 적절한 입법 형식 고려 필요 |
| 안전행정 | 210121210121 | 2014 | ○ 연구용역 이월 지양 및 사후관리 철저 |
| 위원회 (27건) |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운영 | 2015 | ○ 연구용역 추진 시 관련 법령 준수 및 이월 지양 필 요 |
| | | 2013 | ○ 국민대통합위원회 예산 집행관리 강화 |
| | 국민대통합 위원회 운영 | 2014 | 비효율적이고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편성 구조 개 선 필요 |
| | | 2015 | 비효율적이고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편성 시정 필요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국민대통합 | 2014 | ○ 연례적 불용에 따른 대책 필요 |
| | 위원회 운영 | 2015 | ○ 연례적 예산 불용 개선 필요 |
| | 전자본인서명 | 2014 | 본인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 | 사실확인시스템 구축운영 | 2015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활용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 | 밝고 건강한 | 2013 | ㅇ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 |
| | 국가사회 건설 및 성숙한 | 2014 | ㅇ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필요 |
| | 자유민주가치 함양 | 2015 | 국민운동 3단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 지역발전 | 2014 | ○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컨설팅 내실화 필요 |
| | 활성화 | 2015 | ○ 지역간 협력사업 컨설팅 대상 지역 선정 개선 필요 |
| | 지자체 재정분석 및 | 2014 |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 재정제도 개선 | 2015 | ○ 주의등급단체의 적시 지정 필요 |
| | 지방세 정보화추진 | 2014 |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 불편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 | | 2015 | ○ 위택스 접속장애 방지대책 강구 필요 |
| | 도로명 및 | 2014 | 도로명주소 활용도 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계약방식 개선 및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 필요 |
| | 건물번호 활용 | 2015 | ○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사업의 연례적 세목조정 개선 필요, 도로명주소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 지방행정연수원 | 2014 | ㅇ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승인 최소화 필요 |
| | 수입대체경비 | 2015 |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승인 최소화 필요 |
| | 정부3.0 | 2014 | ㅇ 정부3.0 관련 행사성 경비 집행 과다 부적정 |
| | 변화관리 지원 | 2015 | ○ 타 사업예산을 활용한 정부3.0 관련 행사성 경비 집행 지양 필요 |
| | 공공데이터 개방 및 | 2014 | o 국민 수요를 고려한 오픈 API 개발 필요 |
| | 이용활성화 지원 | 2015 | ○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의 민간 활용 실적 제고 필요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행정공간정보 | 2014 | ○ 이용실적 저조 예상 시스템 개발 자제 필요 |
| | 시스템유지보수 | 2015 | ㅇ 생활정보지도 서비스 기능 개선 필요 |
| | | 2013 | ○ 연례적인 공공요금 부족문제 개선 |
| | 정부통합전산 센터운영 | 2014 | ○ 충분한 규모의 공공요금 예산확보 및 부적절한 예 산 전용의 지양 필요 |
| | | 2015 | ㅇ 공공요금 관련 예산의 연례적 조정 개선 필요 |
| | 과학수사감정 | 2014 | 과학수사감정지원 시설장비유지비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정 |
| | 지원 | 2015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양 및 실시설계비 집행 시 규정 준수 필요 |
| | | 2014 | ○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 개선 필요 |
| | 보통교부세 | 2015 |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적용기준의 객관성 제고 필요 |
| | 비영리민간단 | 2014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사업 수행의 투명성 및 공 익사업 선정의 공정성 제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 체지원 | 2015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내용 공개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 스마트폰기반 의 모바일 | 2014 | ○ 아이폰에는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SNS 구축 부적정 |
| | 전자정부구축 | 2015 | ○ 바로톡 및 공통기반 이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
| | 부마민주항쟁 | 2014 | ㅇ 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조치 강화 필요 |
| | 명예회복 지원 | 2015 | ○ 부마민주항쟁 보상금 개선 노력필요 |
| | [인사혁신처] | | |
| | 공무원교육훈련 | 2014 | ○ 위탁교육과정의 집행실적 제고 노력 필요 |
| | O 1 전포적군인 | 2015 | 외국어교육 위탁기관 다변화 필요 |
| | 공무원 | 2014 | 퇴직준비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
| | 후생복지지원 | 2015 | ○ 퇴직준비교육의 체계적 추진 필요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중앙선거관리위 | 원회] | |
| | | 2013 | ○ 예비금 집행시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필요 |
| | 예비금 | 2014 | ○ 예비금 집행 시 예산집행지침 준수 필요 |
| | | 2015 | ○ 예비금 집행시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필요 |
| | [경찰청] | | |
| | | 2013 | ㅇ 징계부가금 징수실적 제고 필요 |
| | 징계부가금 | 2014 | ○ 실효성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 마련 필요 |
| | | 2015 | o 징계부가금 징수 강화 필요 |
| | 017111 | 2014 | ○ 경찰관의 야간근무수당 현실화 필요 |
| | 인건비 | 2015 | o 일선직원들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현실화 필요 |
| | 광역교통관리체 계개선 | 2014 | ○ 경찰청은 UTIS 구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 투자된 사업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 등을 연구할 것 |
| | | 2015 | ○ 경찰청은 감사원 지적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개선 조치 없이 UTIS사업(차량용 교통정보수집장치 부 분)이 재추진되지 않도록 할 것 |
| | [국민안전처] | | |
| | | 2014 | ○ 방제정건조 사업을 철저히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여 적기에 방제정 건조 할 것 |
| | 방제정건조 | 2015 | 주요 지역에 방제정을 적기 보강 배치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방제정 건조 진척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집행 관리 할 것 |
| | [농림축산식품부] | | |
| | 조건불리지역 | 2013 | ㅇ 열악한 지자체 고려, 국비지원비율 조정방안 검토 |
| 농림수산 식품해양 | 직불 | 2015 | ㅇ 열악한 지자체 고려, 국비지원비율 조정방안 검토 |
| 수산위원회 (19건) | 농업재해보험 | 2013 | ○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
| | | 2014 | ㅇ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
| | | 2015 | ○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마련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 2014 | ○ 재해대책비 예산 축소편성, 이자율 무이자 전환 |
| | 개해대책비 | 2015 | 재해대책비 예산 축소편성, 융자 이자율 낮추는 방안 마련 |
| | | 2014 | ○ 지원액 하한선 설정을 통한 행정비용 낭비 방지 |
| | 피해보전직불제 | 2015 | ○ 지원액 하한선 설정 등 제도개선, 보전비율 95% 상향 |
| | | 2014 | ㅇ 매입비 예산단가를 현실화, 정확한 예산편성 할 것 |
| | 정부양곡매입비 | 2015 | ○ 예산상 매입단가를 가장 최근의 수확기 쌀값에 가 중치를 부여하는 등 가능한 정확하게 편성할 것 |
| | | 2014 | ○ FAO연락사무소 사전절차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
| | 국제기구분담금 | 2015 | ○ FAO연락사무소 설치 관련 진행상황 고려 예산편 성 |
| | 해외농업개발 (융자) | 2014 | ㅇ 해외곡물의 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
| | | 2015 | ㅇ 해외곡물의 반입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
| | | 2014 | o 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사업 추진 지연 |
| | 글인합폭경 | 2015 | ㅇ 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사업 추진 지연 |
| | 소비자참여형 | 2014 | ㅇ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 편평성 |
| | 직거래활성화 | 2015 | ㅇ 집행가능성 등에 엄격한 사전검토 후 예산 편성 |
| | 발농업직 불 제 | 2014 | ㅇ 정확한 계측 등으로 예산 불용 최소화 |
| | EOUTEM | 2015 | ㅇ 정확한 계측 등으로 예산불용 최소화 |
| | [해양수산부] | | |
| | 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의 재원 없는 이월 문제 개선 | 2014 | 해양수산부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입예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자금 없는 이월을 최소화할 것 |
| | | 2015 | 해양수산부는 농어촌구조개선과 관련성이 낮은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연관성이 낮은 소요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출을 지양하는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원 없는 이월 문제를 개선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천일염산업 육성 융자사업 집행 부진 시정 | 2014 |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한 융자수요 파악 및 금리인하 등을 통해 융자예산의 집행률을 높일 것 |
| | | 2015 | ○ 해양수산부는 사전 분석과 검토를 통해 융자사업 에서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재해대책비 예산의 목적 | 2014 | 자연재해가 아닌 세월호참사에 재해대책비 사용.해양수산부는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 도록 주의할 것 |
| | 외 사용 시정 | 2015 | ○ 해양수산부는 재해대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 |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집행 가능성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2013 | 원양어선현대화사업은 본래 중소원양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최근 6년 동안 3년은 전액 불용되었고, 그나마 예산이 집행된 3년간은 대기업을 지원하여 사업취지와 거리가 있음 본래 목적인 중소원양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 |
| | | 2014 | 원양어선현대화사업에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선사 의 수요를 높이거나, 현재의 융자조건에 따른 사업 수요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집행가능한 예산액만 편성하도록 할 것 |
| | | 2015 | 해양수산부는 금리 인하, 이차보전사업으로의 변경, 국가보조 사업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집행 가능성을 높이거나 연례적인 집행부진,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것 |
| | [농촌진흥청] | | |
| | | 2013 | ○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방안 개선 필요 |
| | 신품종 지역적응연구 | 2014 | 원예작물 로열티 대응 기술개발의 국내 육성 품종 보급 및 대상 작목 확대 필요 |
| | | 2015 | ㅇ 품종개발 작물의 보급률 제고 필요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 2013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실집행률 연례적 부진 |
| | 지역농촌지도 사업활성화지원 | 2014 | ○ 지역농촌지도사업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 | (생활) | 2015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이 월 축소 필요 |
| | 농업실용화 | 2013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화 성공률 저조 |
| | 기술R&D지원 | 2015 | ○ 기술사업화 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
| | [산림청] | | |
| | 재해보험 농림부예산 | 2014 | 높은 임업재해 발생률과 저조한 임업인과 임산물 재해보험의 가입율을 감안하여, 보험제도 홍보강화와 더불어 보장범위 및 보장수준 확대 등 보험상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2015 | 산림청은 높은 임업재해 발생률과 저조한 임업인 안전보험 및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율을 감안하여, 보험제도 홍보강화와 더불어 보장범위 및 보장수준 확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2014 |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예찰·방제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예찰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방제방식의 도입을 적극 강구할 것 |
| | 산림병해충방제 | 2015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예찰·방제단 인력 확보, 나무주사제 및 국산백신 개발, 연구과제의 확대, 방제사업 추진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피해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내성을 지닌 소나무품종을 개발·보급하도록 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2013 | ㅇ 투자유치기반조성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
| | 투자유치기반 조성 | 2014 | ○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 집행실적 제고 필요 등 |
| | _0 | 2015 | ㅇ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
| | 011171 | 2014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판단할 것 |
| | 에너지 정책홍보 | 2015 | 수의계약 요건 검토를 엄격히 하고 수의계약 재발방지 계획을 세워 보고할 것 |
| | | 2014 | ○ 수도권 집중해소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 | 지역투자 촉진사업 | 2015 |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지역별 지원 편차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지방 민간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 |
| 산업통상 자원 위원회 (15건) | 전력산업기반 기금 여유자금운용 | 2014 |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에너지 분야의 투자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
| , _, | | 2015 | 산업통상자원부는 효과적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여 유자금 운용방안을 모색할 것 |
| | 소재부품기술 | 2014 | ○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관리 방안 마련 필 요 |
| | 개발 | 2015 | ○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관리 개선 |
| | 지역전문가 | 2014 | ㅇ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
| | 양성 및 공급 | 2015 | ㅇ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사업의 성과개선 필요 |
| | 01111-17101 | 2014 | ○ 수요 파악을 통해 융자 규모 예측을 면밀히 할 것 |
| | 에너지절약 시설설치(융자) | 2015 | ○ 실집행이 부진한 내역사업은 다른 내역사업과 통 폐합하는 등 융자 수요를 반영하도록 할 것 |
| | 석유유통구조 | 2014 | o 알뜰주유소 전환 지원 축소 필요 |
| | 개선 | 2015 | ○ 알뜰주유소 전환 지원사업 집행방식 개선 필요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중소기업청] | | |
| | | 2013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창업스쿨 과정을 개설·운영 하는 등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 련할 것 |
| | 창업저변확대 (시니어 창업스쿨) | 2014 | 취업률 제고를 위해 창업스쿨과 창업센터를 결합 하여 운영하는 형태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2015 | ○ 시니어 창업스쿨 등의 창업·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 련할 것 |
| | 인력유입인프라 | 2014 | ㅇ 중소기업 계약학과 충원율 제고방안을 마련 |
| | 조성(중소기업 계약학과) | 2015 | 중소기업 계약학과 과정별 수요조사를 정밀히 하고 충원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 2013 | 실집행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2015 | ○ 실집행률 제고 및 비중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 | 중진기금 | 2014 |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게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할 것 |
| | -정책자금 | 2015 | ○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이 적은 기업, 잠재적 부실기 업에 대한 융자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 실효성을 제고 할 것 |
| | 소상공인지원 | 2014 | ○ 소상공인방송의 시청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할 것 |
| | 인프라(소상공인 방송사업) | 2015 | 소상공인방송사업의 시청률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 | [특허청] | | |
| Ē | 특허심사지원 . | 2013 |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방식을 확대하는 등 심사품질 제고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 2015 | ○ 특허심사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심사·심판인력의 확충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 2013 | 연차등록료 감면율 조정, 감면기간 확대 등 연차등록료의 추가 인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더불어여유자금 활용을 위한 수수료 체계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 | 2015 | ○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연차등록료 감면 방안을 마련할 것 |
| | [보건복지부] | | |
| | 아들다다다 | 2014 | ○ 암환자 의료급여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
| | 암환자지원사업 | 2015 | ○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
| | =111017117 | 2013 | ○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및본인부담국고지원액정산 필요 |
| | 차상위계층 | 2014 | ㅇ 차상위계층 지원 미지급금 정산 |
| | 지원 | 2015 | o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미지급금 정산 필요 |
| | 건강보험가입 자지원 | 2014 | ㅇ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제 도입 |
| | | 2015 | ○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제도 개편 필요 |
| |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 2014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활성화 |
| 보건복지 위원회 | | 2015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 및 치료·재활 연계시스템 구축 |
| (11건) | 첨단의료복합 단지 조성 | 2014 |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적정 수준 지원 |
| | | 2015 |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 대 |
| | 의료급여 | 2014 | ○ 의료급여 미지급금의 해소 필요 |
| | 경상보조 | 2015 | ㅇ 미지급금 해소 필요 |
| | 어리이지 하는 | 2014 | ○ 0~1세 중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 |
| | 어린이집 확충 | 2015 | ㅇ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확충 방안 마련 |
| | | 2013 | ○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기준의 개선 필요 |
| | 기초연금 지급 | 2014 | ㅇ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 |
| | 기소선금 시급 | 2015 |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 및 기초연금 사업 관련 지 방자치단체 재정분담의 형평성 확보 |
| | 시간차등형 | 2014 | ○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의 실효성 제고 |
| | 보육지원 | 2015 | ○ 시간제보육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등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 2013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관리체계강화 및지자체 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
| | | 2014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강화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수요에 맞는 적정 예산 편성 필요 학교 밖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어린이 먹거리 원재료의 위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어린이급식관리중앙센터 설치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
| | | 2015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설치 수요에 맞춰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 | |
| | | 2013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거 의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적정 규모 로 편성할 것 | |
| | 인허가심사지원 등 (수입대체경비) | 2014 |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수입대체경비 를 집행할 것 | |
| | | 2015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을 통하여 심사관 인건비를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환경부] | | | |
| 환경노동 위원회 (15건) | 한강·낙동강·금 강·영산강수계 관리위원회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2013 |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적정한 여유자금 유지 | |
| | | 2015 | 여유자금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해 수입과목 추계 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의 집행이 보다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다각적 노력 | |

| 위원회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2013 | ㅇ 적정 여유자금을 운용 |
| 석면피해구제 기금 -여유자금 | 2014 | 신규 인정자 발굴 노력 강화 및 석면피해 예방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수입 측면에서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등을 사업비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 강구 |
| 운용 | 2015 | 정부 전입금 규모를 축소하고 지출면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정 여유자금 보유를 위한 대책 마련 |
| | 2013 | ○ 법정부담금의 징수율 제고 및 환특회계 구조 개선 |
| 법정부담금 | 2014 | ○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강구 |
| | 2015 | ○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공단폐수처리 | 2013 | 공장설립계획이나 폐수배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설 공사시기를 조정하는 등 적정한 규모의 시설이설치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 시설 확충 | 2015 | 공단의 폐수발생량을 면밀하게 예측하여 시설용량을 설정함으로써 시설의 가동률을 제고 |
| 국립호남생물 | 2014 | ○ 부지안정화비용 부담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 강구 |
| 자원관 건립 | 2015 | ○ 국립호남생물자원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
| [고용노동부] | | |
| 모성보호육아 | 2013 |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근로자들이 모성보호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 지원 | 2015 | ○ 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 2013 | ○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고용보험기금 일반 (실업급여) | 2014 | 정부는 실업급여의 법정 적립금 배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등 적정재정 확충방안을 마 련할 것 |
| | 2015 | ○ 충분한 실업급여 적립금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시간선택제 | 2013 | ○ 집행이 가능한 적정수준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할 것 |
| | 일자리지원 | 2014 | ○ 집행률을 제고할 것 |
| | | 2015 |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人みつ人ない | 2014 |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 정부예산사업과 차별성있게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 |
| | 숙련기술장려 사업 | 2015 | 고용노동부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 정부 재정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 | | 2013 |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특정직종으로의 편중 해소와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해외취업지원 | 2014 |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 | | 2015 | 고용노동부는 특정 직종으로의 편중 완화 및 다양한 직종 발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
| | 중소기업청년 | 2014 | ○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성과를 제 고할 것 |
| | 취업인턴제 | 2015 | ○ 고용노동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할 것 |
| | | 2013 | ○ 가입률 제고와 함께 폐업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 | 자영업자 실업 급여 | 2014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 | | 2015 |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 | | 2013 | ○ 신규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사회보험사각 기대해소 | 2014 |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1 11-11-4 | 2015 | ○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할 것 |
| | 017#177" | 2014 | ㅇ 임금피크제지원금 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할 것 |
| | 임금피크제 지원금 | 2015 | o 과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기상청] | | |
| | 위약금 | 2013 | ○ 위약금 징수현황은 예산액 대비 급격히 증가, 준공 지연·장비도입 지연 등에 따른 사업관리 부실 |
| | | 2015 | 계약업무 추진과정에서 장비 등의 납품지연이 최 소화될 수 있도록 중간 지도·점검, 단계별 업무협 의 등의 대책 수립·시행 |
| | [국토교통부] | | |
| | 주택가격동향 | 2014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거나연도말 전용을 통해 전용 예산 전액이 이월되는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조사 | 2015 | ○ 국토교통부는「국가재정법」제45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주택가격동향 조사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것 |
| | 노후공공임대 주택 시설개선 | 2014 | ○ 2016년 이후에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7575 | | 2015 |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지속적·안정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국토교통 위원회 (19건)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 2014 | ○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
| | | 2015 |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 정 예산을 편성하여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
| | 항공전문인력 양성 | 2013 | 국제항공전문가 양성사업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및 항공조종인력 양성 성과지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 | | 2014 | 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의 사업실적 제고 및 교육생 누적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방지 방안 모색 필요 |
| | | 2015 | 항공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 6개월~2년 간의 고용유지 상황에 대한 사후실적 관리를 실시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화물자동차 휴게소건설 지원 | 2013 |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 지원사업은 근거법령 개정 전에 사업예산을 편성한 바, 향후 면밀한 사전 행 정절차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국고보조금 교부시에는 사업집행 상황을 검토하여 집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교부할 것 |
| | | 2015 | 국고지원기준 조정을 검토·협의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예산의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디지털운행 기록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 2014 | 적극적이고 철저한 사업수행을 통해 디지털운행분석 활용실적을 제고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것 |
| | | 2015 | 개인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자료 확보 방안, 적정한 피드백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사업개선 및 성과 관리를 통해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 | | 2013 | 녹색교통 조사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연구과 제의 추진을 지양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할 것 |
| | 녹색교통조사 및 연구 사업 | 2014 | ○ 향후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녹색교통조사 및 연구예산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할 것 |
| |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 | 2015 | 녹색교통조사 및 연구 사업의 연구용역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 | | 2014 | 고속도로 조사설계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단계별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계상하는 등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 | | 2015 | 총사업비나 관계기관 협의의 신속한 완료,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통해 고속도로 조사 설계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을 제고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 2014 |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나 준비 없이 세부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총사업비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국도건설 | 2015 | 국도건설프로그램 내 세부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협의기간 단축, 부실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전용이나 내역변경을 최소화 할 것 |
| | 과태료 | 2014 | 체납자인 운전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을 정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징수담당공무원 인력확충 및 징수관리시스템 개선 등 징수율 제고를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 | 2015 | 상습체납자의 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과태료 징수 실적을 제고할 것 |
| | 7LOIDIC 7101 | 2014 | ○ 보조금 예산 교부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실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교부할 것 |
| | 광역BIS 지원 사업 | 2015 | 자치단체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등 적절한 사업관리를 통해 광역BIS 지원 사업 보조금의 이월을 최소화할 것 |
| | 대도시권교통 혼갑도로 | 2014 | 지자체 예산집행실적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을 강 구할 것 |
| | | 2015 |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적정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 단계에서 예산의 실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해소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 | 2014 |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LH의 미착공 공공주택부지 중 토지 보상이 미착수된 지구 등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을 추가로 취소하고 기금 지원금을 회수할 것 주택 공급에 있어 미착공물량을 우선순위로 해소하고, 불필요한 기금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착공 가능한 규모로 공급계획을 수립할 것 |
| | | 2015 | 공공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미착공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적정 규모의 기금 지출을 위해 실제 착공 가능한 규모로 공급계획을 수립할 것 |
| | | 2013 | ○ 연내 실집행 가능 수준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교통광장 설치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
| | | 2015 | ○ 실집행률 제고 방안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 | 2013 |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재생사업지구지정에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예산편성 전에 이끌어 내도록 노력함으로써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 | 새성비 시원 | 2014 | ○ 실집행 부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 및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 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 | | 2015 | ○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실집행률 제고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 |
| | 호남고속철도 건설 | 2014 | 재정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단계 사업 구간의 노선을 조속히 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 |
| | | 2015 | 사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체 구간에 관한 사업추진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산업단지진입 도로 지원 | 2013 | ○ 입도로의 적기 준공을 위해 완고예정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원없는 이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주의할 것 |
| | | 2015 | 사전에 산업단지진입도로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산업단지와 산업단지진입도로 건설에 있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준공시기를일치시키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실적을제고할 것 |
| | | 2013 | 로유지보수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목적 대로 사용 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도로유지보수 | 2014 |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도로 유지보수사업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 |
| | | 2015 | 도로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 관리로 전용규모를 최소화하고, 적정수준의 차선도색 예산확보 및 차선도색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차선관리를 하도록 할 것 |
| | 도시정책 종합연구 | 2014 | ○ 연구용역을 연초에 발주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이 월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2015 | 국토교통부는 연구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용역을 조속히 발주함으로써 도시정책 종합연구 사업 예산 의 과도한 이월 문제를 시정할 것 |
| | [여성가족부] | | |
| 여성가족 위원회 (4건) | 성인지예결산 제도 개선 | 2013 | 성인지 결산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조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 | | 2014 | ○ 성인지 예·결산의 평가 및 환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2015 | ○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저조 부처 및 부처별 성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위원회 | 사업명 | 회계연도 | 시정요구 요약 |
|-----|-------------------|------|---|
| | 아동·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 | 2014 | ○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의 고위직 참여율이 저조 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 |
| | | 2015 |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국가 및 공공기관 고위직의 참여율을 제고할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 | | 2013 | 적정규모의 예산을 반영하고 아이돌보미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아이돌봄 지워 | 2014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에 적절한 예산을 반영하는는 등 사업운영을 개선할 것 |
| | 12 | 2015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필수 경상경비인 서비스제공 기관 종사자의 인건비및 행정부대 경비에 대한 적 정예산을 확보노력 필요 |
| | 청소년수련 시설 확충 | 2013 | ○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의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것 |
| | | 2014 |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의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 | | 2015 |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의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